



「2022년 경찰공무원 시험대비」 경찰학 OX 문제 및 해설(4)

| 박용증 교수 | 박문각 경찰학원



50.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의 것이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이를 용인 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

[해설]

당연 무효인 경우 이를 용인하더라도 치유되지 아니한다.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정되고, 무효인 행정행위는 적법한 다른 행정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51.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해설]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과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와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이다(제18조).

52. 「행정기본법」상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 부관을 불일 수 있는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불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

[해설]

사후부관이 가능한 경우는 ①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불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법동사 사후부검】 부관의 요건으로 ①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②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③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등이 있다.

53.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불일 수 있으며,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불일 수 있다. ()

[해설]

제17조①

54. 부담과 정지조건의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부담으로 보아야 한다. <21경간> ()

[해설]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의 성취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부담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부담으로 보아야 한다.

55.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그 자체를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5서울9급> ()

[해설]

부관 중에서 부담에 한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6.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형식적 관련성이 있으면 족하고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으로부터는 자유롭다. <16교행9급> ()

[해설]

행정기본법 제17조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독연필】

-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57. 행정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

[해설]

행정기본법 제19조

58. 처분청과 감독청은 철회권을 가진다. ()

[해설]

철회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직권취소와 달리 처분을 한 행정청만 철회를 할 수 있고 감독청은 철회를 할 수 없다. 감독청이 철회를 할 수 있다면 합리적 이유없이 처분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취소는 처분청과 이를 감독하는 감독청도 할 수 있다.

59.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해설]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9조①).

60.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3년이 지나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

[해설]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사례와 같이 3년 후에 면허취소를 한 경우는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더 가혹하다고 보았다. (대판 1987.9.8. 87누373)

61. 타인을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피지배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찰위반에 대하여 경찰책임을 지는 경우, 자기의 지배범위 내에서 발생한 데에 대한 대위책임이다. <20경간> ()

[해설]

경찰책임을 경우 대위책임이 아니고 자기책임이다.

62. 경찰책임을 예외로서 경찰간부권은 급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찰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적근거는 요하지 않으나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간부권의 발동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명·건강 등 제3자의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19채용2차> ()

[해설]

경찰간부권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며, 소방기본법, 경범죄처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자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63. 경찰하명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을 경우는 당해 영업에 대한 거래 행위의 효력이 부인된다. <21경간> ()

[해설]

경찰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여기서 법적효력은 사법(私法)상 효력을 의미한다.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물건을 판매하여도 그 거래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의미이다.

64. 허가는 행위의 유효요건일 뿐, 적법요건은 아니다. <18 채용3차> ()

[해설]

허가는 적법요건이며 유효요건은 아니다. 위반하여 위법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65. 강제징수 절차는 독촉 → 체납처분(압류-매각-청산) → 체납 처분의 중지 → 결손처분 순으로 진행된다. <121경간> ()

[해설]

66. 해산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산조치, 불법영업소의 폐쇄조치, 감염병 환자의 즉각적인 강제격리는 모두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21승진> ()

[해설]

외국인 강제퇴거, 해산명령 후 강제해산, 불법영업소 폐쇄 등은 직접강제에 해당하고, 감염병 환자의 즉각적인 강제격리는 즉시 강제이다.

67. 대집행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작위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0승진> ()

[해설]

대집행은 대체·작위의무에 대해서 한다. 【대-대작】

[정답]

50.	X	51.	O	52.	X	53.	O	54.	O	55.	O
56.	X	57.	O	58.	X	59.	X	60.	O	61.	X
62.	X	63.	X	64.	X	65.	O	66.	X	67.	X